

수원지방법원 2022. 11. 17 선고 2022가단50507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승현, 최승관

피 고 B

피고 보조참가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진

변 론 종 결 2022. 10. 6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. 9. 3. 접수 제1401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,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중 수원가정법원 2018드단513747호 화해권고결정(이하 ‘이 사건 화해권고결정’이라 한다)에 따라 이혼하였는바, 그 재산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원고(이 사건 원고)와 피고(이 사건 피고)는 이혼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원고는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(이 사건 별지 목록 부동산, 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.

나. 피고 보조참가인(이하 ‘피고 참가인’이라 한다)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‘임대차보증금 13,876,2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’을 발령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21. 5. 14. 확정되었다.

다. 피고 참가인은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2019. 5. 23.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21. 9. 23. 위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다.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1/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21. 9. 7.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 주장

1) 원고

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/2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대신, 위

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이후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의 1/2에 상응하는 123,000,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였다(이하 편의상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.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참가인이 피고를 대위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.

2) 피고 참가인

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, 이 사건 약정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. 8. 10. ‘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결과에 의거하여 을(이 사건 원고)은 현재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치의 절반을 갑(이 사건 피고)에게 2020. 12.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한다.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분할 금액으로 123,000,000원을 지급한다’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,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123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(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는 내용의 2022. 5. 25.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, 위 답변서가 2022. 8. 18. 진행된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),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로 변경되었고,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.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참가인은 앞서 본 ‘피고 참가인 주장’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으나,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‘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자인한 이상 피고 참가인이 이를 다투다고

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[나아가 피고 참가인이 이를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,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(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)]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현정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동[도로명 주소] 경기 용인시 기흥구

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16층 아파트

1층 307.704㎡

2층 ~ 14층 524.48㎡

15층 ~ 16층 264.666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09.70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

대 23750.7㎡

대지권의 표시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: 23750.7분의 60.740

공유자 지분 1/2

